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0년 10월 7일(목)

나. 제출자 : 마포구청장

3. 복지도시위원회 회부일자

2010년 10월 8일(금)

4. 제정근거

「학교급식법」(법률 제10070호, 2010. 3.17) 제5조, 제8조,

제9조

5. 검토의견

○ 2005년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대규모 식중독사고 이후 학교급식의 제도개선 및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하여 2006년 「학교급식법」을 전면개정·시행하고 있으나 급식시설 위생관리, 식재료의 구매 및 조리 과정 등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아동 및 청소년들의 급식안전 문제가 사회적 논쟁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학교급식 환경 개선 및 안전한 식재료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및 식생활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안 제5조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의 장에게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 및 현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 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범학교 및 우선 지원대상을 선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경우 안 제4조 및 제5조와 관련, 급식지원 소요예산 추계 현황(마포구 교육지원과 자료)을 보면, 우리구 급식지원 대상자는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47개 초·중·고(특수학교 포함) 41,178명과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1개소 2,903명,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188개소 6,674명으로 총 대상자는 50,755명이 되겠으며, 이중 안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중 초등학생 전원에게 친환경 급식으로 무상 지원할 경우 10,107백만원, 초·중학생 전원은 14,815백만원 그리고 초·중·고등학생 전원은 19,086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보편적 교육복지 증진과 학부모 교육비 경감을 위해 2011학년도에 초등학교부터 무상급식을 우선 실시하고, 연도별로 중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며, 소요예산 전액을 교육재정으로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최근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 예산지원을 요청하여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0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제3호다목에서 마목까지 중 “의한”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각 “따른”으로, 같은 호 바목 중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안 제4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이하 “구”라 한다)”는 이하 약칭을 사용한 조항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안 제6조제1항제6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조항과의 용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하고, 안 제7조제2항 중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용어를 정리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안 제8조제2항제2호가목 “서

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1명”은 삭제하고, 나목에서 사목까지를 가목에서 바목까지로 수정을 요함.

안 제10조에서 구청장은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우수 식재료 공급 및 학교급식 등의 지원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급식지원센터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수급, 지원예산의 지도·감독 그리고 생산 및 물류, 공급에 대한 관리기능을 수행할 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급식법」 제5조제5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급식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을 요함.

제10조(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우수 식재료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정기적인 급식 실태조사
2.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범위선정
3. 생산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선정

4. 유통 및 공급 관리
5.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6. 심의위원회,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지원대상 시설과의 급식업무 협의
7. 그 밖에 급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안 제11조제2항 중 “관할 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이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관할 교육청”을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안 제12조 제목 “다른 법규와의 관계”는 조문 정리를 하여 “다른 법령등과의 관계”로, 같은 조 중 “국가의 관계법규나”는 “법령이나”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에”로 각각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전문위원 수정의견

원 안	수 정 안
<p>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p> <p>제2조(정의) (생략) 1. ~ 2. (생략) 3. (생략) 가. ~ 나. (생략)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우수 품질인증 식품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우수 품질 인증품(원양산 포함) 바. 생산자 단체 또는 해당 <u>지방자치단체장</u>이 인정한 우수 농특산물 사. (생략) 4. ~ 5. (생략)</p> <p>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u>서울특별시 마포구</u>(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p> <p>1. ~ 4. (생략)</p> <p>제6조(지원신청) ① (생략) 1. ~ 5. (생략) 6. <u>그 밖에 필요한 사항</u></p> <p>② ~ ③ (생략)</p>	<p>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p> <p>제2조(정의) (원안과 같음) 1. ~ 2. (원안과 같음) 3. (원안과 같음) 가. ~ 나. (원안과 같음) 다. ----- ----- <u>따른</u> ----- ----- ----- 라. ----- <u>따른</u> ----- ----- ----- 마. ----- <u>따른</u> ----- ----- ----- 바. ----- <u>지방자치단체장</u> ----- ----- 사. (원안과 같음) 4. ~ 5. (원안과 같음)</p> <p>제4조(지원대상) ----- <u>서울특별시 마포구</u>----- ----- ----- ----- ----- 1. ~ 4. (원안과 같음)</p> <p>제6조(지원신청) ① (원안과 같음) 1. ~ 5. (원안과 같음) 6. <u>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② ~ ③ (원안과 같음)</p>

원 안	수 정 안
제7조(지원대상의 의무) ① (생략) ② 지원대상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u>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③ ~ ④ (생략)	제7조(지원대상의 의무) ① (원안과 같음) ② ----- -----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④ (원안과 같음)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생략)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1명 나. 서부교육지원청 관련 국(과)장 1명 다. 학교, 유치원 또는 시설의 장 1명 라. 관내 학부모 단체 추천인 1명 마. 학교급식 영양(교)사 또는 조리사 1명 바. 급식관련 시민단체 추천인 1명 사.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③ ~ ⑧ (생략)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원안과 같음) ② (원안과 같음) 1. (원안과 같음) 2. (원안과 같음) (삭제)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 ③ ~ ⑧ (원안과 같음)
제10조(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구 청장은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우수 식재료 공급 및 학교급식 등의 지원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단, 급식지원센터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우수 식재료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원 안	수 정 안
<p>제12조(<u>다른 법규와의 관계</u>) 구청장은 제4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이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한 명목으로 국가의 <u>관계법규나</u> 서울특별시의 해당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급식경비 지원금을 <u>재조정</u> 할 수 있다.</p>	<p>12조(<u>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u>) -----</p> <p>-----</p> <p>----- <u>법령이나</u></p> <p>-----</p> <p>-----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에 -----</p> <p>----- <u>조정</u></p> <p>-----.</p>

관 계 법령

학교급식법

[시행 2010. 3.17] [법률 제10070호, 2010. 3.17, 일부개정]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경비부담 등) ①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 ②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③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